



# 이슈리포트

2008. 7.15

KT, IPTV로 재도약하나

KT노동조합

[www.kttu.or.kr](http://www.kttu.or.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전화:031-727-4800 ■팩스: 031-727-4815

<이슈리포트 - 2008년 7월>

## KT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키워드, IP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이하 'IPTV법'<sup>1</sup>)은 시행령 제정안이 6월 27일 확정되고, 7월 23일 고시안이 의결되면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법제화 논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8월 11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IPTV법이 통과된 이후 5월 9일 입법예고 되었으나 통신사업자, 케이블방송사업자, 인터넷포털사업자 등 각계 입장에 부딪혀 지체되어 왔다. 특히 지상파방송사, 케이블사업자 등은 망동등접근권, 콘텐츠동등접근권, 사업자 지배력 전이 등이 KT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매출 목표를 12조5,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평소 성장동력으로 IPTV와 와이브로를 꼽은 KT로서는 IPTV법과 업계동향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조합원들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쟁점들을 짚어본다.

### 1. IPTV법 시행령 주요 내용

#### 1) 사업자는 5년마다 재허가 심사 받아야

IPTV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5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초 시행령에는 최초 사업허가 기간이 3년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5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최초 허가고시는 항목별로 100점 기준에 60, 70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 재허가는 이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2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콘텐츠 수급계획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재정적 능력 등을 기준으로 허가를 심사하게 된다.

---

<sup>1</sup> IPTV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해 실시간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다. 이는 양방향성,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 채널구성의 다양성과 무한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발전을 가능케 한다. 실시간 VOD, 문자메세지, 전자상거래, 게임, 노래방 등 다양한 양방향 통신서비스를 TV수상기를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서비스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IPTV법은 방송과 통신의 결합, 이용자편익 증진 및 콘텐츠/기기 산업발전 기대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8일 제정되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메가TV, 하나TV 등의 VOD(주문형 비디오)은 프리IPTV라고 할 수 있다.

## 2) 콘텐츠동등접근권은 프로그램 아닌 채널 단위

KT,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대기업은 다른 방송채널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격을 얻게 되었다. 콘텐츠동등접근의 대상을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채널 단위로 명시한 것이다

콘텐츠 사업을 하려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각각 5 억원 이상 갖추어야 하며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추고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3)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대기업 진입 완화

한편 이번 IPTV 법 시행령으로 대기업의 보도채널 소유가 쉬워져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일고 있다. IPTV 종합편성, 보도전문 콘텐츠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자를 자산규모 10 조원 미만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3 조원 이상보다 크게 완화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4 월 발표한 기준에 따라 자산 10 조원 미만에 속하는 애경, 현대백화점, 태광, 동부, 대림, 이랜드 등 36 개 기업이 '자격을 갖춘다면' 사업에 뛰어 들 수 있게 되었다.

## 4) 망동등접근권으로 포털업계 진입장벽 낮춰

이 밖에 설비고시는 인터넷망이 없는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임대해 이용할 수 있는 IPTV 필수설비에 대해 규정했다. 인터넷포털업계는 일단, 망동등접근 대상에 FTTH 등 IPTV 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망이 다 포함되어, 망 시설이 없는 IPTV 사업자에 대해서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설비의 최소 사용기간은 1 년이다.

## 5) 사업 투명성 위해 회계분리 기준 제시

방통위는 IPTV 사업자들이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IPTV 관련 회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IPTV 법 시행령 중 지배력 전이방지 관련 조항을 '회계분리' 로 확정된 것이다. 케이블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KT 와 같이 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IPTV 사업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분리만으로는 공정경쟁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KT 를 비롯한 IPTV 제공사업자들이 분리해야 할 회계에는 급여, 복리후생비,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콘텐츠 개발비, 결합판매 수익 등 거의 모든 업무가 포함된다. 또한 투입되는 개인/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만들어야 하고, 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100 분의 1 단위로 표시한 실제업무수행표도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 2. KT와 IPTV법 쟁점 시행령

지상파방송사, 케이블업계 등은 IPTV법 시행령 논의단계부터 논란이 된 망동등접근권, 콘텐츠접근권, 지배력 사업전이 등이 KT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뚜껑이 열리면 콘텐츠 경쟁이 될 방송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KT가 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1) 100만 가입자는 겨우 80억?

IPTV가 지상파 TV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입자 규모가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 KT는 최근 유선전화의 매출이 예상보다 급감하고, 하반기 결합상품 출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등으로 마케팅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매출목표를 하향 조정한 상태다. 때문에 가입자 수를 늘릴만한 성장동력으로 IPTV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메가 TV는 6월말 기준 누적가입자가 70만명을 돌파, 앞서 시장에 진입한 하나 TV 누적 가입자 수 83만명을 바짝 뒤쫓고 있다. KT가 올해까지 FTTH 망을 80%정도 구축하여 IPTV 시장의 토대를 마련하면 결합상품 등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결합상품으로 8,000원에 서비스되고 있는 메가 TV가 100만 가입자에 도달할 경우 그 금액이 80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 계산대로라면 300만 가입자를 양산해도 240억원에 불과하다. 굵직한 사업들이 조 단위 매출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맥 빠지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IPTV의 점진적 가입자수 증진은 KT가 통신기업에서 방송을 겸비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변신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

### 2) 기존채널+킬러콘텐츠 확보해야 광고수익 기대

IPTV 시장을 선점하려면 근본적으로는 가입자들의 구매력을 자극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의 확보가 시급하다. 지상파 채널과 케이블 채널은 기본으로 확보하고, 메가 TV만의 독특한 킬러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한다. 소비자들이 기존 지상파나 케이블 TV, IPTV를 한꺼번에 시청하는 이중지출을 원할 리 없고, 광고주 역시 재방송 프로그램에 광고경쟁을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메가 TV가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대상의 방송을 시작하고, 영어콘텐츠 제작에 뛰어든 것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시행령의 콘텐츠동등접근권에 따르면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채널단위의 계약이 가능해 KT 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고 조심스레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이블 업체들이 CP 등록을 꺼린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KT 계열사인 올리브 9, 사이더스 FnH 등의 콘텐츠와 지상파 방송 재전송만으로는 IPTV 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가 버거울 수 있어, 케이블사업자들과의 관계설정도 매우 중요하다.

### 3) 망임대료 어떻게 풀어야할까

지난 7 월 14 일, 방통위는 중재 끝에 KT 와 11 개 케이블 TV 사업자가 설비 임대료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5 년 5 월부터 지난해까지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이용한 KT 의 전주와 관로 임대료를 74 억 6,000 만원에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KT 는 2004 년 케이블업체들에게 전주와 관로 이용에 대한 임대료를 37 억원에서 206 억원으로 높여 재계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IPTV 사업 개시를 앞두고 결정된 것이어서 KT 의 콘텐츠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 양측은 올해 사용분부터는 방통위가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을 토대로 망 임대료를 산정하기로 했는데, 적용대상이 통신역무에 한정돼 있어,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IPTV 를 앞두고 KT 가 통신과 방송을 분리해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맞는 필수설비 임대료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4) 공격적 영업보다는 내실기하기 고민을

케이블사업자들은 상품결합판매를 통한 IPTV 마케팅비용의 회계분리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KT 등이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결합상품가입을 유도해 IPTV 가입자를 늘리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들은 IPTV 에 소요되는 마케팅비용을 분산 처리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매력적인 콘텐츠 제공이 아닌, 공격적인 영업력만을 내세운다면 과열경쟁을 불러와 자칫 실속 없는 허수 늘리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T 는 과거 비영업부서의 불법적인 상품판매로 과징금을 물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지난 6 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유출로 40 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고객 수 늘리기와 함께 고객정보 및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 통신서비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준다.

#### 5) 방송사로서의 양심 추가... 공익성 필요

외부에서는 IPTV 의 사업주체가 KT 와 같은 통신기업이기 때문에 방송사로서의 윤리문제를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콘텐츠동등접근권에서 프로그램 선정 기준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빼고 공익성을 넣은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KT 는 통신서비스뿐 아니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로서의 공익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3. 맺음말

현재 메가 KT, 하나 TV, myLGTV 등을 중심으로 저렴한 결합상품들이 붓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IPTV 로 투자대비 얼마만큼의 성장세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대세를 뒤로 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IPTV 와 와이브로를 성장동력으로 꼽는 KT 로서는 7 년간의 매출정체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이자, 통신기업에서 엔터테인먼트기업으로 이미지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일은 FTTH 등 망 보유 능력을 앞세우기 보다는 콘텐츠 등으로 얼마만큼 차별화를 거둘 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다. 콘텐츠의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공익성을 갖춘 IPTV,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통하지 않은 IPTV, 조합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KT IPTV 사업을 기대해 본다.

참고 1)

### <고시안 요지>

#### □ 허가·신고·등록·승인

- IPTV 제공사업은 허가, 콘텐츠사업은 신고(기존사업자), 등록(신규사업자), 승인(보도·홈쇼핑·종합편성)으로 구분하여 심사절차 및 방법, 심사사항, 배점 등을 규정
- 심사기준은 IPTV 법 제 4 조 제 4 항(IPTV 제공사업자 허가)과 방송법 제 10 조 제 1 항(콘텐츠 사업자 승인)이 정한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을 획득한 제공사업자를 선정
- IPTV 제공사업의 최초 허가신청 기간은 '08. 8.11~8.18 일로 규정
  - 콘텐츠사업에 대한 신고, 등록, 승인은 고시시행후 수시

#### □ 회 계

- 타 사업의 인력투입 시 IPTV 관련 영업비용으로 처리 회계분리 검증을 쉽게 하기 위해 융합기능설비별로 회계정리
- '무형자산,' '영업비용' 각각의 항목에 콘텐츠의 산업재산권 및 개발비항목을 포함시켜 회계 정리

#### □ 설 비

- 필수설비는 선로기반설비(전주, 관로 등)와 가입자선로공용설비(xDSL, FTTH 등)로 구분
- 필수설비 이용사업자에 망이 없는 사업자도 포함
- 제공설비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

출처: 방통위

참고 2)

### 〈IPTV 법제화 일지〉

- ▲2004. 10. = 광대역통합망(BcN) IPTV 도입 필요성 제기
- ▲2005. 10. = 유승희 의원 정보미디어사업법안 발의
- ▲2005. 11. = 김재홍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 ▲2005. 12. = KT 여의도 미디어센터 개설 및 시연
- ▲2006. 1. = 정통부 및 방송위 개별 법안 준비 착수
- ▲2006. 1. = 방송통신실무준비 TF 가동
- ▲2006. 7.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융추위) 발족
- ▲2006. 8. = 정통부-방송위간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 ▲2006. 10. = IPTV 시범사업자 선정 KT·다음 선정
- ▲2006. 11. = 융추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확정
- ▲2006. 11. = IPTV 공동시범서비스 개시
- ▲2007. 1. =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 ▲2007. 2. = 노동조합, 융추위의 자회사 분리 논의에 대한 반대입장 천명
- ▲2007. 3. = 노동조합, 방송위원회의 IPTV도입방안에 대한 비판
- ▲2007. 4. = 융추위 IPTV 법안 다수안·소수안 확정
- ▲2007. 7. = 국회 방통특위 IPTV 법안심사 개시
- ▲2007. 7. = 노동조합, 이광철의원의 융합법안 비판
- ▲2007. 7. = 노동조합, IPTV법제화 토론회 참관 “자회사 분리 불가 · 전국면허 허용” 주장
- ▲2007. 7. = 노동조합, 국회의원 면담 제안서 제출(IPTV 제안서: 자회사 불가, 전국면허의 필요성 강조)
- ▲2007. 11. 15. =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 소위 IPTV 쟁점 합의
- ▲2007. 11. 20. = 방통특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가칭) 의결
- ▲2007. 11. 23. = 국회 방통특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수정 의결  
(외국인에 대한 내용 수정: 전기통신사업법과 동일)
- ▲2007.12. 28 = 국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통과
- ▲2008. 5. 9 = IPTV 시행령 입법예고
- ▲2008. 6. 27 = 방통위, IPTV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08. 7. 10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
- ▲2008. 7. 23 = 방통위, IPTV관련 고시안 심의, 의결